

영등포구의회
제15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0. 10. 2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6호로 2010년 10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평생건강 기틀을 마련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통한 급식의 질 향상 도모와 평등하고 기본적 복지차원의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

3. 주요내용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급식”, “무상급식”, “급식에 필요한 경비”, “식재료”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무상급식을 위한 협조(안 제3조)
-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등

으로 규정(안 제4조)

- 지원방법으로 예산 또는 현물지원을 규정(안 제5조)
- 15명 이내의 “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안 제6조)
-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7조)
- 지원대상자의 친환경농산물 사용 및 지원금 정산의무(안 제8조)
-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지도·감독(안 제9조)
- 기타 시행규칙 및 준용사항(안 제10조~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3항,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제9조

나. 예산조치 : 관련 소요예산 편성필요.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 의무이며 권리인 교육의 권리 중 의무교육의 무상교육을 실현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평등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법」 제3조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우리구를 비롯한 서울시 18개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사항

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치구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무상급식 계획, 재정지원 기준 등의 역할분담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참고사항 】

-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 상정 보류
 - 사유 : 의장단과 서울시 집행부간의 의견조율
- 재원분담비율 : 서울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위하여 기존 교육사업이나 구민생활에 직결된 사업 등을 폐지하거나 축소가 우려되므로 신중하고 심도 있는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6조 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기타부문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참고사항 】

- 외국의 무상급식 : 북유럽국가(스웨덴, 핀란드 등) - 100%, 미국 - 49.5%, 영국 - 34%, 일본 - 저소득층, 중국 - 무상 교육, 유상급식
- 서울시 성북구 - 24개 공립초등학교 6학년생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조례 미제정

관 계 법 령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개정 2007.10.17, 2010.7.23〉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